기출 사례 연습

A는 인쇄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0. 3. 20.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건물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5억원의 자금을 차용한 다음, 며칠 후 "신일인쇄"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 A는 세금 목적상 자신의 형인 C의 묵인 하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외적 거래행위 역시 C와 공동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C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A는 2020. 7. 20. 같은 방식으로 D로부터 인쇄기 2대를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 가운데 3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A는 신일인쇄의 폐업신고를 하고, 2021. 6. 20.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주)선진인쇄"를 설립하면서 신일인쇄의 영업재산 일체를 (주)선진인쇄에 현물출자하는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A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선진인쇄의 주식 70%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30% 주식은 C가 보유하고 있다. C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번에도 (주)선진인쇄의 사업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A의 D에 대한 매입대금 채무는 (주)선진인쇄가 인수하지 않았다.

[제1문]: B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10점)

[제2문]: D는 C에게 인쇄기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제3문]: D는 (주)선진인쇄를 상대로 인쇄기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추가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철강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A는 2011. 3. 20. 이후로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철강납품단가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甲회사는 내부사무분장에 따 라 각 임원이 자신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위 철강납품단가의 결정은 담당임원의 전결 로 처리하게 되어 있었다. A는 철강납품단가의 결정 또는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甲회사는 2018. 7.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주주충회 특별결의를 거쳐 상장회사인 乙주식 회사에 양도하였다. 乙회사(자본금 500억원, 총자산 1,500억원)는 주주총회결의 없이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1,000억원 가운데 일부인 500억원만 우선 甲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乙회사는 2020. 8. 부실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 생하여 결손상태가 되었다. 乙회사의 대표이사 B는 2020. 9. 고정자산가액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과 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이 당기순손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주식시장에는 계속 이에 기초하여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0. 12. 기준으로 정기적인 이익배당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1. 8.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이어 2021. 10.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위 분식회계가 사실로 확정되었다.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하여 잔금 500억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불황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2. 7. 乙회사가 영업 양수 당시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영업양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제4문]: A는 과징금으로 인하여 甲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가? (15점)

[제5문]: C는 2020. 1.부터, D는 2021. 6.부터, E는 2022. 6.부터 乙회사 주식을 각 2%씩 취득하여 2022. 8. 현재 보유하고 있다. C, D, E는 乙회사 대표이사 B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책임원인으로 고려하지 말고, B가 회사 또는 각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라) (30점)

[제6문] : 乙회사는 영업양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회사에 대하여 영업양수대금 500억원의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